

주주의 의결권

법학박사 김 대 수

프로필



김대수 법학박사

dskim4005@naver.com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주요 활동

- (사)한국창업멘토협회 이사/전문위원
- 창업진흥원 전문위원
- 중소벤처기업공단 심사위원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 사업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자문위원
-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전문위원
- 전자투표제도 도입 추진단
- 선물시장개설 인프라구축전담반
- 유가증권 대차제도도입반
- 유가증권예탁결제제도 편찬위원회
- 발행회사, 증권회사, 교사, 대학생, 사법연수생 등 금융전문강사
- 한국거래소 KSM기업 자본조달 멘토
- 국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신규 제도 도입 정책 추진 및 관련법규 정비 지원

<목 차>

I. 주주총회

II. 주주의 의결권

III. 의결권 행사

IV.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I. 주주총회

의의

주주로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

의사결정
기관

필요적
상설기관

최고기관

권한

- 상법/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정관상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정한 경우 결의 가능

- 상법상 결의사항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제1항), 배당결의(제462조 제2항), 영업양도(제374조), 정관변경, 자본 감소, 회사합병, 조직변경, 자기주식취득의 승인,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승인(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 2 제4항) 등

- 정관상 결의사항

상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사항

이사회 권한이지만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 신주의 발행(제416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 제1항), 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 2 제2항) 등

- 특별법상 권한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 소집 정기주총에 사실 보고(외감법 제4조 제2~3항), 보험사업자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할 경우 특별결의(보험업법 제138조)

회의의 소집

- 소집권자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결정(상법 제362조)-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정,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
소수주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 임시총회 소집 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 소집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 임시총회 소집 청구(상법 제412조의 3 제1항)-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 소집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법원에 결과 보고, 법원은 필요 인정 시 총회 소집을 명령(상법 제467조 제3항)

*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주주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을 6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제542조의 6)

회의의 소집

-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주주들의 경영참여 위한 주주제안권
- 당해 소수 주주(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소집 통지·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
-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 주주제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함 ⇒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소집시기

정기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결산기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 - 연 2회 이상 결산기 정한 경우 매 결산기 총회 소집 - 소집시기는 정관에 명시
임시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 - 예외 소집 강제 ① 검사인의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결과보고에 의한 소집명령(상법 제467조 제3항) ② 흡수합병의 보고 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③ 청산인의 회사 재산상태조사내역의 승인(상법 제533조 제1항) ④ 청산 종결의 승인(상법 제 540조 제1항) 등

- 소집 시기만 차이(정기총회 소집시기는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 소집), 권한(재무제표 승인 : 정기주총사항), 절차 및 결의의 효력은 동일

회의의 소집

- 회의 일시 및 소집 장소
 -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에 기재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동일한 생활권의 행정단위)
 - 통상 소집 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나 본점 소재지 및 인접지를 벗어난 장소인 경우 소집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상법 제376조 제1항) ⇒ 결의취소사유 해당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출석 주주를 수용하기 곤란한 정도로 협소한 경우 등)

회의의 소집

- 소집 절차

- (1) 소집의 통지·공고

- 통지대상 : 의결권 없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통지·공고 방법 :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주주의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

- ※ 구두 전화 문자 등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음

- 통지공고기간 : 회일 2주간 전에 통지, 회일 3주간 전에 공고

- 통지공고내용

- √ 회일, 주총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예시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상법 제363조 제2항)

- √ 정관변경, 자본금감소, 회사합병 등 특정한 경우 의안의 요령 기재

-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은 총회 소집통지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명시(상법 제374조 제2항)⇒의결권 없는 주주도 통지

회의의 소집

(2) 특례

- 장기불참주주에 대한 특례

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 제2항).

- 소규모회사의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 ①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가능.
- ②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
-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회의의 소집

- 상장회사의 특례

-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소액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DART: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상법 제542조의 4 제1항).
-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제542조의 4 제2항)
-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거래 등을 통지 또는 공고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3) 소집철회·회의의 연기

- 총회 소집에 준한 소집절차에 의할 경우 총회 소집 통지 후 소집 철회나 총회일의 연기 가능
- ※ 속행결의에 의한 속회(계속회)는 총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별도의 소집절차 불요

(4) 소집통지·공고의 해태

- 회사가 총회의 소집통지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적법하게 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사유(상법 제376조 제1항)가 되고, 대표이사는 과태료 제재(상법 제635조 제1항 2호)
- ※ 당해 주주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경우, 주주 전원 출석한 만장일치 결의 시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

의사진행

1. 의사진행

- 개회와 폐회

- 속회 : 의안의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일을 다시 정하여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것⇒①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의 속행을 결의하여 후일에 총회를 개최(속회), ②별도의 소집 절차 불요(동일성 유지), ③참석주주는 당초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주주

2. 의장

선임

-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의장,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 ⇒ 의장 자격 제한 무.
-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상법 제366조 제2항)

권한

-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질서유지권)
-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령(퇴장명령권)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공정하게 의사진행

결의

- 다수결의 원리로 형성된 주주들의 의사표시⇒주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주 전원과 회사의 각 기관 등 관계자 전원을 구속
- 총회가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성립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의결정족수 요건으로 변경

<주주총회 결의요건>

구분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특수결의	인수주식총수의 과반수 +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불산입 :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의결권 없는 상호주(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이 휴지되는 주식(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 출석 의결권수의 불산입 :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의결권(상법 제371조 제2항)
- 참석 주식 중 기권 또는 무효인 주식수는 반대에 산입,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이면 해당 의안은 부결

결의

- 결의는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수결의 요건에 차이

< 의안별 결의 요건 >

구분	결의 요건	결의 사항
보통결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보수의 결정, 감사인의 선임 등 - 회계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의 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청산결정의 승인 등 -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 청산인 해임 등
특별결의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본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계속·합병·분할, 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 회사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본금의 감소, 액면미달의 주식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특수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주주의 동의 -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인수주식총수의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 -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신설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창립총회 결의

관련 판례

① 전원출석총회의 유효성(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감사선임 3% 초과주식(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도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관련 판례

③ 중요한 일부 양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영업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과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양수와 영업의 양수로 인해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결의

•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373조)
- ②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 ③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등기사항(이사·감사의 선임, 합병·자본감소 등)일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등기 신청서에 의사록 첨부
- ④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 기재 한 때에는 벌칙(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⑤ 의사록은 10년간 보존

•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 ①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표결에 들어가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의 수 확인되는 순간 결의의 성립과 효력발생
- ② 등기이사의 선임, 정관변경의 경우 결의요건 충족 시 효력 발생 ⇒ 등기변경 등은 후속 행위

결의

※ <참고>종류주주총회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상법 제435조) ⇒ 종류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

■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상법 제435조 제1항)
- 주식의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상법 제436조)
-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상법 제436조)

■ 결의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의결권 없는 주식도 의결권 가짐)

Ⅱ. 주주의 의결권

의결권의 의의

- 의결권(voting right)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권자로서 지위 내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기본적 권리
- 다수결원리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공익권
- 법이 인정한 경우에만 박탈할 수 있는 고유권
 - ※ 정관의 규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은 불가
-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및 포기 불가

의결권의 수

- 1주 1의결권의 원칙

-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1주에 1개를 원칙(주수주의)
- 상법상 제한을 제외하고는 정관상 제외 불가(강행규정)
- 주주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한 수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불가
- 총회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의장에게 결정권 줄 수 없음
- 예외 : 이사 선임 시의 집중투표제

- ※ 복수의결권 인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
⇒ 회사는 정관 규정상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상법 제 344조의 3 제1항)
- ②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함.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 일부 제한하는 의안의 경우 구체적 규정
 - 의결권 예외적 인정되는 종류주식 : 우선 배당을 포기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회사가 우선 배당을 못하게 된 경우 의결권 회복 등
- ③ 의결권의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초과 불과
⇒ 초과 발행 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초과주식의 일부 소각, 의결권 주식의 추가 발행 등)

의결권의 제한

2. 자기 주식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양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① 취득 방법

- 거래소 시장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공개매수의 방법

② 취득 요건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배당가능이익)을 초과 금지(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보통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 다만, 이사회에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 상환주식은 정관에 정한 상환가액, 상환방법 등 발행조건에 따라야 함으로 자기 주식 취득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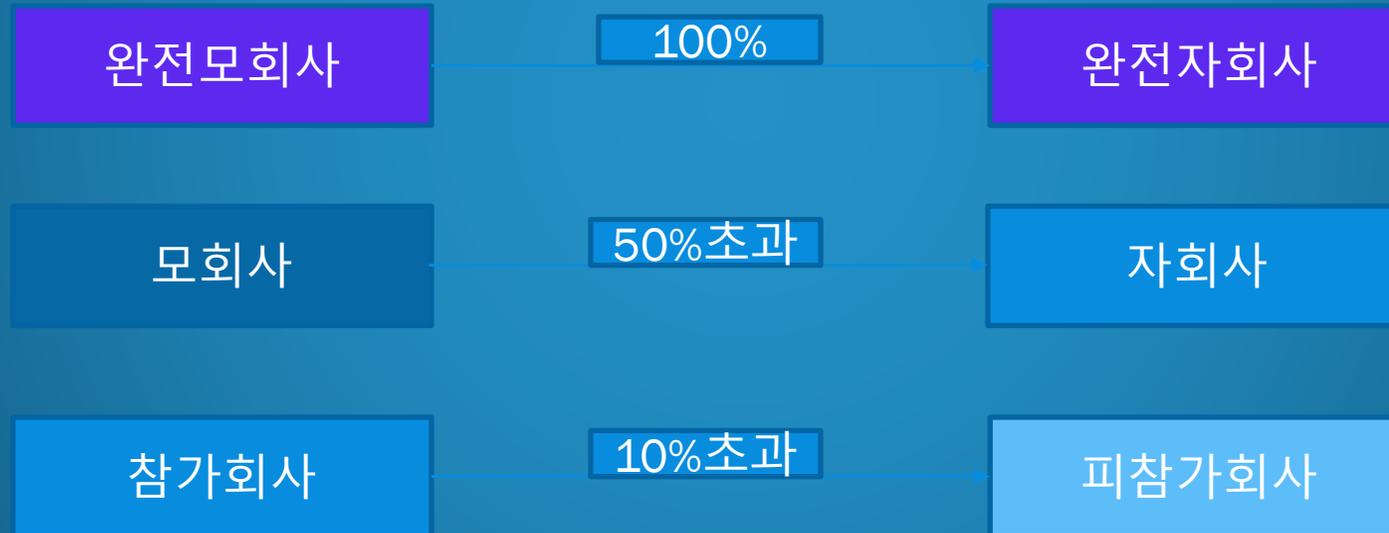
③ 취득 효과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 369조 제2항)
- 회사가 발행한 실질적인 주식수에서 제외 ⇒ 자익권 및 공익권 불인정

의결권의 제한

3. 상호보유주식

<상호보유주식 유형>



의결권의 제한

(1)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母會社)의 주식은 그 다른 회사(子會社)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 2 제1항)
⇒ 변칙적인 자기주식 취득의 일종, 자본의 공동화 초래, 지배구조 왜곡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 2 제3항)
-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의 효력은 사법상 무효⇒의결권 등 공익권 및 자익권 행사 불가. 이사와 감사는 벌금형(2000만원 이하) 적용

의결권의 제한

(2) 비모자회사간 상호주 규제(피참가회사 소유 참가회사주식의 의결권 제한)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피참가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참가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 자본충실 저해, 출자없는 경영권 지배 방지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상법 제342조의 3)
- 피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의 의결권 박탈, 이 외 공익권 및 자익권은 행사 가능

<상호주 의결권 제한 유형>

보유 유형	의결권 제한	주식취득통지의무
갑→을(10% 초과 보유)	을 소유 갑 주식	갑→을(0)
갑→을(50% 초과 보유)→병(10% 초과 보유)	을의 갑 주식취득금지 을 소유 갑 주식, 병 소유 갑·을 주식	갑→을(0) 을→병(0)
갑→을(50% 초과 보유) 갑+을→병(10% 초과보유)	을의 갑 주식취득금지 을 소유 갑 주식, 병 소유 갑 주식	갑→을(0) 을→병(x)

의결권의 제한

4.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

-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 의결권의 남용 방지로 결의의 공정 유지

<특별이해관계인 여부>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특별이해관계인 비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하는 결의 시 주주인 이사·감사■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시 주주인 이사·감사■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 결의 시 상대방인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결정 시 주주인 이사·감사■ 재무제표의 승인 결의 시 주주인 이사■ 합병·분할 등 경우 상대방이 되는 주주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 불가,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는 불산입
- 의결권 행사 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상법 제376조 제1항)

의결권의 제한

5. 감사선임결의시 제한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
- 감사선임결의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수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불가(상법 제409조 제2항) ⇒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 ※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해임할 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3% 의결권 제한 적용(상법 제542조의 12 제4, 7항)
 - * 회사는 정관으로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
 - *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3% 계산
- 발행주식총수 : 산입(학설), 불산입(판례), 출석주주의 의결권 : 불산입(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의 제한

6. 집중투표배제 결의 시 제한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 ①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상법 제 542조의 7 제2항).
 - ②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 불가(상법 제542조의 7 제3항).

※ 집중투표제란

-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시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Ⅲ. 의결권 행사

의결권 주주 확정

1. 소유자명세 확정

-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회사는 상법상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전자증권법 제37조 제1항).

※ 발행회사의 결산기준일 설정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확정기준일을 설정하고 기준일의 2주간 전에 회사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신문공고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으로 설정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 ② 전자등록기관은 발행회사로부터 기준일 등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기준일을 통지받은 경우 계좌관리기관에게 기준일을 통지하고 계좌관리기관에게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 종목, 수량 등의 통보 요청
- ③ 계좌관리기관은 기준일 현재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소유분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고객소유분은 그 고객을 소유자로 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
- ④ 전자등록기관은 모든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아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발행회사)에 통지(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최근 주소지 계좌로 해당 주식수를 합산)

의결권 주주 확정

2.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아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회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영업점에 비치(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

<전자등록제도에서의 주주명부>

소유자명세		
H 증권회사	김전자	1,500주
M 증권회사	정이차	3,500주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	5,000주
합 계		10,000주

주총 통지

3. 주주 대상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발행회사 의뢰)는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상 권리주주를 확정하여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주주 동의)로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문(또는 기준일 명시된 정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제출 등 일정 협의

- ① 주주총회 참석장 : 주주총회 일시, 주주총회 장소, 의결권수 등 표시
- ② 주주총회 소집 통지물 : 주주총회 목적사항 기재된 소집 통지문, 의결권행사 안내문, 정관변경 시 정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 시 후보자의 정보,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 개요 등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나 비치로 대체할 참고서류(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① 참고서류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하거나 그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내역
- 영업 현황 등 사업 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외감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② 대체방법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열람 비치(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

의결권 행사 방법

1. 의결권행사의 자유

- 주주는 주주총회 참고자료의 분석 등을 하여 본인의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
-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주주총회는 총회의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에 해당(상법 제 376조 제1항)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않고 행사하는 것(상법 제368조의 2 제1항)
-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총회의 3일 전까지 도달
-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
⇒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아니면 불통일행사의 실익이 거의 없고, 의결권 산정 등 불편 야기
-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유효하여 정족수계산에 산입. 불통일행사를 통지하고 통일행사한 의결권은 유효(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간의 문제)

의결권 행사 방법

-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직접 행사와 간접 행사로 구분

<의결권 행사 방법>

직접 행사	현장투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서면투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않고 서면으로 의결권행사
	전자투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
간접 행사	의결권대리행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행사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통한 의결권행사
	신청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신청에 의해 의결권행사

의결권 행사방법

1. 직접행사

-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행사원칙
- 주주명부상 기준일 현재 주주로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량(의결권수)가 기재되어 인적 동일성 확인되면 주총 결의에 의결권 행사

2. 서면투표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상법 제368조의 3 제1항)

<서면투표와 서면결의 비교>

구분	서면 투표	서면 결의
의의	일부의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같음
근거	정관 규정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동의
대상	모든 주식회사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의결권 행사방법

-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의 경우 서면투표 자료를 송부(공고 불가)
- 주주는 총회의 결의 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주주에 관한 사항 및 의안별 찬반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
- 서면투표내용은 출석 의결권에 반영
- 의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수정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의안에 대한 서면 의결권 행사는 기권 간주
-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한 경우 철회·변경 가능

의결권 행사방법

3. 전자투표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상법 제368조의 4)

<도입 배경>

- 주주총회의 집중 개최 ⇒ 매년 3월 셋째주, 넷째주 금요일 70%이상, 서울 등 수도권(70%)과 지방(30%)에서 개최
- 주주들의 주총 참석 애로 ⇒ 시간적 공간적 불편 및 무관심
-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 곤란
⇒ IT 기술을 융합한 주주총회의 IT화로 장애를 해소하여 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의 간편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 중시 경영 실천

<도입 경과>

- 2009. 5. 28. 상법상 전자투표 도입 근거 마련
 -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신설
 - 상법 시행령 개정('09.11.28) 및 상법 개정 법률 시행('10. 5. 29)
- 2010. 8. 23.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기관 업무 수행 개시
- 2020.1. 29.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공인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정보 사전 통지 허용(주주 동의 시 전화번호 등 활용 가능)

의결권행사 방법

- 요건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채택

- ② 회사는 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 ※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의 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전자투표 안내

- ①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상법 제368조의 4 제2항)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주주총회일 10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전일 17시까지)),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포함

-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 ※ 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총회정보(주주명부, 의안 정보, 의결권 제한내역 등) 통보(전자투표홈페이지 등록)

- ②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전자투표 관련사항을 한 번 더 통지 가능. 이 경우 주주의 동의를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상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의결권행사 방법

<전자투표 기본구조>



발행회사

전자투표관리업무위탁계약

전자투표관련자료제출

전자투표행사내역통보

주주총회결과 제출

전자투표관리기관

정보관리
주주정보
주주총회정보

전자투표관리
전자투표권자명부 확정
전자투표결과집계

주주총회결과관리
주주총회결과통지
전자투표행사기록비치·보존

전자투표참고자료제공

전자투표행사

주주총회결과조회



주주

의결권행사 방법

- 전자투표권자명부의 작성

- 전자투표권자는 회사가 제출 한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① 예탁결제원은 회사가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작성.

※ 전자투표권자명부 기재사항

① 주주 및 전자투표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은 투자등록번호 등) 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전자투표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④ 그 밖에 전자투표권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탁결제원은 작성한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통지 ⇒ 회사는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확인.

의결권 행사방법

• 전자투표방법

① 주주는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https://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

※ 주주 본인 확인 방법

▶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

▶ 민간인증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

②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③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상법 제368조의 4 제4항).

④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

• 전자투표결과관리

① 회사는 전자투표수와 현장투표수를 합산하여 의안별 정족수 확정 및 전자투표기관에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과 통보

②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의결권 행사방법

4. 의결권 대리행사

- 대리인(제3자)이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 주주권 행사의 편의 보장과 총회의 정족수 확보

-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없음, 회사가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 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행사 방법

• 대리권의 수여

① 대리인의 수	- 1인 또는 수인(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통보 시 각자 대리)
② 수권의 범위	- 대리권은 총회별로 수여 및 증명
③ 수권의 철회	- 주주는 결의 전에는 언제든지 수권행위 철회 가능 - 중복 위임의 경우 주주가 먼저의 위임은 철회, 뒤의 위임을 유효한 것으로 봄

- 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상법 제368조 제3항)
위임장은 위·변조 위험 방지를 위해 원본 원칙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방법

- ②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수권 받은 대로 의결권을 행사
⇒ 주주의 의사와 달리 의결권 행사한 경우 유효
- ③ 대리인은 주주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재차 위임(재위임) 가능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방법

5.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위임장 권유)

- 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자가 주주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경영권 지배 목적 등으로 이용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상장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규제

※ 권유 행위 유형(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 외의 자가 10인 이상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교부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

※ 자료 교부방법(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동 법시행령 제160조)

- ①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②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③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④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인 경우 해당],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의결권행사 방법

• 기재사항

※ 위임장 용지 및 참고 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 참조

위임장 용지	참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②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③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④ 위임할 주식 수 ⑤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⑥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⑦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⑧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②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③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의결권행사 방법

①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 금지(자본시장법 제154조)

②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어야 함.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의 허용이나, 자기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발행인에게 요구⇒ 발행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허용(자본시장법 제152조의 2)

• 위임장 용지 등의 공시

①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발행회사의 권유내용기재 서면 등은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주주는 위임장에 주주 및 주식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위임할 주식수) 및 의안(목적사항)별 찬성·반대·기권여부를 표시하여 위임

•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의결권행사 방법

6. 전자위임장 권유

- 위임장권유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위임장권유의 전자화)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방식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도입 배경>

- 위임장 권유의 효율화 ⇒ 전 주주 대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간편한 처리
- 주주총회 활성화 ⇒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로 원활한 총회 개최

<도입 경과>

- 2015. 1. 1 자본시장법상 근거 마련
 -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신설(법시행령 제160조)
- 2015. 1. 2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업무 개시
- 2021. 1. 29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 서식 개정
 - 전자위임장 용지 서식 신설 등

의결권행사 방법

- 요건

- ① 전자위임장 권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채택 가능
- ②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 전자위임장권유 안내

- 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
- ②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주주(전자위임장 피권유자)에게 ㉠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뜻 ㉡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을 포함) 홈페이지 주소 ㉢ 전자위임장의 수여 방법 및 기간(주주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 까지) ㉣ 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위임장 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통지
- ③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 주주총회 의안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제한 내역 ㉦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함
- ④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주주명부 제외) 중 전자위임장 수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기간(전자 위임장수여기간) 중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의결권행사 방법

- 전자위임장 공시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DART : <https://dart.fss.or.kr>)와 거래소(KIND : <https://kind.krx.co.kr>)에 제출(자본시장법 제153조).

-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 작성

-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는 발행회사가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①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를 작성

※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 기재사항

① 주주 및 전자위임장 피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 등) 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식수 ④ 그 밖에 전자위임장 피권유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탁결제원은 작성한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위탁회사에 통지

③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를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확인.

의결권행사 방법

• 전자위임장 관리

-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별로 전자위임장용지를 작성 하여 관리

※ 전자위임장 기재사항

- 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 ②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 받는 자
- ③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④ 위임할 주식 수
- ⑤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 ⑥ 주주총회 회의 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 ⑦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 ⑧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위임장 수여

- ①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 홈페이지(<https://evote.ksd.or.kr>, <https://evote.ksd.or.kr/m>)에서 본인 확인 후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통해 전자위임장 수여
- ② 전자위임장 피권유자는 전자위임장용지에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 총회의 의안별로 찬반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위임장을 수여.
 - 상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은 일부 주식에 대한 전자위임장 수여.
 -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의 의사표시⇒ 이 경우 전자위임장피권유자는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
 -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단수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

의결권행사 방법

- ③ 전자위임장피권유자의 의사표시 등은 전자 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 ④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위임장권유자가 전자위임장으로 위임받아 행사한 의결권은 기권처리
 - ⑤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이 종료된 후 전자위임장을 취합하여 그 내역을 위탁회사에 통보.
- ※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수여기간 중에도 전자위임장 피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수여 내역을 위탁회사에 제공.
- ⑥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 ⇒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⑦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을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전자위임장 피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의결권행사 방법

7.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행사

주주(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등 간의 약정)

- ① 계좌관리기관등은 해당 주주 총회 회일의 5영업일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회일의 3영업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신청

- 의결권행사신청서와 의안별 찬성·반대·기권을 기재한 신청자 명세

- ② 예탁결제원은 의결권행사신청내역을 취합·집계 및 발행회사에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의결권불통일 행사 통보
- ③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행사신청내역에 따라 의결권 행사하여 의결정족수에 반영

IV.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취소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 소(訴)의 원인(제소사유)

소집절차상의 하자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이사회결의는 없었으나 정당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이사회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상의 하자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지방법을 그르친 경우(구두 소집통지)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거부하고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에 회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 아닌 자가 결의 참가	-일부의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
	의결권 제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행사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감사선임결의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
	결의요건의 위반	-특별결의사항을 보통결의사항으로 결의 한 경우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이 안 되는데 가결을 선포한 경우 등
	불공정한 의사진행	-정관에 기재된 의장이 아닌 자가 회의를 진행한 경우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한 경우 -총회관을 동원하는 등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의하는 경우 등
	무효인 정관에 의한 결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정관조항에 따라 결의한 경우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정관의 규정을 위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원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사에게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

결의취소의 소

- 소의 성질
 -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형성의 소) ⇒ 2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 제소권자
 - 제소 당시의 주주, 의결권 없는 주주, 총회 참석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 제소 당시 이사·감사, 후임이사·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감사
- 피고
 - 회사, 다만 이사가 원고인 경우 감사(상법 제394조 제1항)
- 제소기간
 -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월 내
- 판결의 효력
 - 회사와 제3자에게 효력(대세적 효력), 소급효
 - 패소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 결의취소의 소의 특칙
 -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상법 제379조)
 -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령.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불가(상법 제377조)

결의무효확인소

-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상법 제380조)

소의 원인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사항의 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위법 배당의 결의한 경우 -기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
소의 성질	확인소(판례)	
제소권자	소의 이익이 있는 자	
제소기간	없음	
판결의 효력	대세적 효력, 소급효,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 제소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인정, 법원의 재량기각권 불인정
- ※ 결의 내용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 잘 이용되지 않음

결의부존재확인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상법 제380조)

소의 원인	소집절차에 하자	-주주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경우 등
	결의방법에 하자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 -유효하게 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등
소의 성질	확인소(판례)	
제소권자	소의 이익이 있는 자	
제소기간	제한 없음	
판결의 효력	대세적 효력, 소급효,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

소의 요건	①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것 ②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할 것 ③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
소의 성질	형성의 소
제소권자	특별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내
판결의 효력	대세적 효력, 소급효,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

- 법원의 재량기각권 불인정, 제소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인정

감사합니다

김대수 법학박사
dskim4005@naver.com